

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수 신 :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
참 조 : 도시철도토목부장
제 목 :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준공에 따른 행정조치 관련 회신

1. 귀 본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도시철도토목부-13774(2018.11.26) 관련입니다.
3. 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1번 출입구 및 환기구에 대한 기부채납 및 잔여 사업비 납부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기부채납 관련

- 1) 기부채납 해당토지(둔촌동 174-1번지)는 현재 근저당권, 압류,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제한물권 말소, 소송을 통한 말소절차 진행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- 2) 현재 상태로 분할후 기부채납을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아파트공사 준공 이후에 이전고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3) 다만, 해당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및 토지사용권(유지관리책임 포함) 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잔여 사업비 납부 관련

- 1) 잔여사업비 납부 요청에 대하여는 잔여사업비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부담금액에 대한 적정성검토(준공 도서 및 법률 검토)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2) 사업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 따라 귀본부에서 사업비 정산등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- 3) 다만, 귀본부에서 요구한 납부일정에 대해서는 년내 준공 및 시설물 이관 등 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에 잔여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, 조합 내부의결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예정입니다. 끝.

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



문 서 번 호 : 둔재 2018 - 344호

시 행 일 자 : 2018년 11월 28일

우)05404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, 316호(생내동) / 전화 (02)473-0220 / FAX (02)6427-6427